

#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996. 3. 13

기획경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5년 10월 27일

○ 회부일자 : 1995년 10월 27일

다. 상정일자 : 제1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95. 11. 2) 상정

라. 재상정일자 : 제1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96. 3. 13) 상정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관 박 경 국)

가. 제안이유

- 지방공사 의료원을 운영함에 있어 의료원장의 지나친 신분보장과 연임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의료원 경영의 책임성을 확보하여 의료원 경영을 개선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

## 나. 주요골자

### ○ 의료원 임원중 원장의 연임 횟수를 1회로 단축

- 2회 연임 → 1회 연임
- 연임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

### ○ 의료원장 면직요건을 변경

-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위원회의 해임건의가 있을 경우  
→ 당해 의료원 이사회의 해임건의가 있을 경우를 추가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 재 평)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지방공사 의료원을 운영함에 있어 의료원장의 지나친 신분보장과 연임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의료원 경영의 책임성을 확보하여 의료원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로는

첫째, 안 제11조 의료원 임원중 원장의 연임 횟수를 2회 연임과 경영평가 결과 그 실적이 특히 우수한 원장의 경우에 추가로 연임할 수 있었던 것을 경영실적평가 결과 그 실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안 제12조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위원회의 해임건의가 있을 경우에만 도지사가 원장을 면직시킬 수 있었던 것을 경영실적평가 결과 경영평가위원회의 해임건의와 당해 의료원 이사회의 해임건의가 있을 경우 도지사가 원장을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하는등

원장에 대한 감독기능을 보강하여 의료업무의 활성화를 기하고 경영합리화를 통한 본래 의료원의 역할과 기능인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케 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 6.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제안일자 : 1996. 3. 13

○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나. 수정이유

충청북도 직제개편에 따라 청주의료원의 이사중 당연직이사가 예산담당관에서 공기업담당관으로 바뀌고 의료원 사무조사시 대두되었던 경영평가위탁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범위를 확대하며

유명무실한 규정이 되어 버린 부칙 제2항을 삭제하여 의료원 경영을 개선하고자 함.

다. 수정 주요골자

제16조 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원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의 이사회는 이사(공기업담당관)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8조의 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②(경과조치)를 삭제한다.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참석 8명, 찬성 8명)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10. 심사보고서 붙임 서류

가.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및 지방공사 충주의료원 설치조례증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신·구조문 대비표

나.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및 지방공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설치조례증 개정조례안